

 백석대학교	대학원학칙시행규정	제정일	2001.10.01.
		개정일	2025.01.02
		주관부서	대학원교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칙시행규정은 백석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에 의거하여 대학원의 제반 학사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편입학·재입학

제2조(입학 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①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입학자격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1. 기독교전문대학원 신학전공(Ph.D.) : 목회학석사학위(M.Div.)와 신학석사학위(Th.M.) 취득자 또는 목회학 동등 과정 수료자로서 신학석사학위(Th.M.) 취득자
 2. 기독교전문대학원 실천신학전공(Th.D. in Min.) : 신학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 ② 석사학위과정 : 학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취득자. 다만, 해당 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입학자격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1. 삭제 <2022.2.21.>
 2. 삭제 <2022.2.21.>
- ③ 별도의 입학자격 요건으로 경력사항 및 현직 해당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제3조(전형 방법) 입학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전공 관련 과목, 외국어, 논술 등으로 구성하되, 각 대학원의 형편에 따라 시험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 ① 필기시험 : 전공 관련 과목, 외국어, 논술 등
- ② 구술시험(면접) : 수학능력, 연구계획, 적성, 인성 등을 심사한다.
- ③ 특별한 사정이나 대학원 형편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전형으로 입학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입학 등록) 입학시험 합격자는 소정기간 내에 입학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 완료자는 입학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5조(특별전형) 석사학위과정은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전형에 응시한 자는 면접으로



선발하며, 그 인원과 지원자격은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2.21.>

제6조(정원의 입학전형) 교육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입학 대상자(학·군협정, 외국인, 재외국민, 위탁학생 등)의 전형방법과 일정은 각 대학원별 입학전형과 동일하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배점) 입학 전형 배점은 대학원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편입학) 본 대학원의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재입학) 「대학원학칙」 제12조에 관련된 사항과 재입학의 지원절차, 응시자격, 모집인원,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재입학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1.>

제3장 등록·휴학·복학

제10조(등록 및 등록금 반환)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22.2.21.>

②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반환사유가 질병 등으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1조(학점 등록) ① 소정의 모든 학기 등록을 마쳤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점등록을 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3.9.1.>

1.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3.9.1.>
2. 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로 학점취득을 희망하는 경우(단, 1개 학기(6학점) 이내로 한 함, 별도의 절차 필요) <개정 2023.9.1.>

② 학점등록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1. 신학대학원: 그 부족 학점수가 8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1학점당 수업료의 1/20, 9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 <신설 2023.9.1.>
2. 기타 대학원: 그 부족 학점수가 3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1/2, 4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 <신설 2023.9.1.>

제12조(휴학) 군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일수 1/4이상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휴학원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일반휴학 : 일반휴학의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며 총 2년 이내에 한하여 허락한다. 신(편)입학자의 당해 학기 일반휴학은 허락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에 의한 휴학기간의 연장은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군 입대휴학 : 군입대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징집명령서(사본)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간부후보생 제외).

③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 2년 내에서 휴학을 허락한다.

⑤ 군 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의 경우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① 전염성 질병휴학자가 완치되어 복학할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군 입대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군 제대 예정자가 학업 시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복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휴학, 복학자 등록) ① 등록을 마친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다만 복학 시 등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인상액을 부과할 수도 있다.

1.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 인정
2.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기 납부한 등록금 2/3 해당액 인정
3.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기납부한 등록금 1/2 해당액 인정
4.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 기 납부한 수업료 전액 불인정
- ② 군 입대, 질병,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휴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인정한다.
- ③ 등록금 분납자가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의 완납 등록금액을 기준으로 위 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 장 전공변경, 수강신청 및 성적

제15조(전공변경)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전공변경 신청원(소정 서식)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공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제16조(전공변경 횟수)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공의 폐지, 신설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허락할 수 있다.

제17조(전공변경전 취득학점 인정 및 추가 수강) ①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전 전공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된 학점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교과목은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전공을 변경한 자는 변경된 전공 관련 교과목을 2분의 1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 변경 전 취득학점 인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2.21.>

제18조(수강신청 절차)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 및 해당 사항을 전산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제19조(수강신청 정정, 철회, 재수강)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수강 신청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2과목에 한하여 해당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수강 신청 과목을 철회했을 경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



고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는 “W” (withdrawal)로 기재된다. 수강 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기 취득한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 교과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 수강한 과목명과 학점이 동일하여야 한다.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기 취득한 성적과 재수강 하여 취득한 성적 중 우수한 성적을 인정한다.

제20조(신청과목의 변경)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소정의 기간 내에 변경할 수 있고, 이 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폐강, 강의시간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동일 교과목 중복 수강금지) 재수강 대상 과목 이외에는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으며 중복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미신청 교과목 이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은 담당 과목의 교수가 그 성적을 제출했어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성적 평가 방법) 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물, 기타 사항 등을 종합 평가하되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에게는 출석미달자로 학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경건실천의 경우 본 규정 제32조에 따른다. 다만,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한 자로서 군입대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결석은 해당기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계가족(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은 5일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는 최대 2주
3. 병역 의무로 인한 경우에는 소요 기간
4.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에 참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5. 국제 회의 참가 또는 이에 준하는 학회에 참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6. 기타 교학처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7. 본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20일 <개정 2021.3.1.>
8. 본인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5일 <개정 2021.3.1.>

제24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개시 일주일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시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② 추가시험은 허가 받은 학생에게 한하여 실시하되, 성적취득은 B+ 이하로 한다.

제25조(성적 열람) ① 학생은 해당 학기 성적열람기간을 통해 본인의 성적을 열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중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확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1. 출석 미달자의 취득 성적

2. 학기당 소정의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
 4.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한 성적
- ② 교학처에 제출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수의 전산 입력 착오나 행정적 오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학점·이수학점·수강학점·학점인정·수료

제27조(학점 및 시간) 학점은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이수학점) 본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 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4학점 이상(단, 가정전문간호학전공 33학점 이상) + 논문, 추가수강(6학점) 중 택일 <개정 2023.9.1.>
- ②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과정 36학점이상, 석사과정 24학점이상, 석박사통합과정 48학점 이상, 신학박사과정 24학점이상 <항 이동 2023.9.1.>
- ③ 신학대학원: 92학점 이상(또는 86학점 + 논문) <항 이동 2023.9.1.>
- ④ 기타 대학원: 30학점 이상(또는 24학점 + 논문, 학위과제, 졸업연주회, 졸업전시회 중 택일) <항 이동 2023.9.1.> <개정 2024.6.21.>
- ⑤ 선수강(先受講)을 요하는 과목은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만이 수강신청 할 수 있다. <항 이동 2023.9.1.>

제29조(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수학점) 본 대학원 학생은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0조(타 대학원의 학점 인정) 본 대학원 학생이 학문 연구 활동을 위해 본 대학 대학원 및 타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 ① 본 대학이 인정하는 국내외 타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학생의 연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 ②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다음과 같다.
 1. 신학대학원 : 최대 20학점까지
 2. 기타 대학원 : 최대 10학점까지
- ③ 본 대학 및 타교 대학원의 필요에 의해 개설한 대학원 간 공동강의에서 취득한 학점은 예외로 한다.
- ④ 교육부에서 위탁한 위탁생의 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청강 및 학점등록) ① 본 대학과 대학원간 학점교환제 협정체결을 맺지 않은 타교 대학원생이 본 대학원에서 청강 또는 학점등록을 원할 경우 소정의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 분	청 강	학 점 등 록	비 고
신학대학원	1학점당 수업료의 1/40	1학점당 수업료의 1/20	
기타 대학원	1학점당 수업료의 1/12	1학점당 수업료의 1/6	

- ② 입학 전 학점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성적은 해당 대학원 진학 후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최대 인정학점은 해당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인정은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장 경건훈련

제32조(경건훈련) 신학대학원 입학생 및 재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특성에 부합되는 경건훈련과정을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경건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그 시행은 「경건훈련에 관한 세칙」로 정한다.

① 예배 : 매 학기 주 1회, 총 6개 학기 동안 시행한다.

② 수련회 : 신입생영성수련회는 입학 전에, 개강수련회는 매 학기마다, 졸업영성수련회는 졸업 학차에 시행한다.

제33조(예배출석) 신학대학원 재학생은 경건훈련을 위한 예배에 참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제 7 장 학생활동

제34조(학생회 설치) 본 대학원 재학생들은 신앙심과 학풍을 고취하고,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배 동문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 안에 ‘백석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이하 ‘원우회’라 칭한다)를 둘 수 있다.

제35조(운영과 활동 및 승인) ① 원우회의 기본 조직, 회칙개정, 예산 및 결산과 그 집행 및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교학처의 지도를 받는다.

② 학생들은 학내·외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 활동이나 정치활동, 그리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③ 학생들의 모든 단체활동은 사전에 소정서식에 의하여 대학원교학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학생활동의 모든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교내·외의 광고,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교학처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제36조(단체의 조직) 학생들이 단체(예, ‘동아리’)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대학원교학처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연구과정·공개강좌과정·위탁교육과정

제37조(연구과정) 연구과정의 입학정원, 전형, 운영 등은 「연구과정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취득 학점) 각 대학원 연구과정의 취득학점은 해당 학위과정의 취득학점과 동일하다.

제39조(입학시기) 연구과정의 입학은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40조(수료증)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연구 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1조(공개강좌과정) 본 「대학원 학칙」 제8장제31조에 의거하여 공개강좌과정을 운영할 수 있

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공개강좌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42조(위탁교육과정) 타 기관으로부터 위탁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위탁교육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제 9 장 외국어시험·종합시험

제43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0 장 학위 논문 대체

제44조 <삭제 2024.6.21.>

제45조 <삭제 2024.6.21.>

제46조 <삭제 2024.6.21.>

제47조 <삭제 2024.6.21.>

제48조 <삭제 2024.6.21.>

제49조 <삭제 2024.6.21.>

제50조 <삭제 2024.6.21.>

제 11 장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51조(학위논문 규정) 본 대학원의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제52조(학위논문 작성 및 제판 요령) 본 대학원의 학위논문 논문작성 요령, 논문 제판에 관한 요령 등은 「대학원 논문 작성지침」을 따른다.

제53조(학위수여) 본 대학원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제출된 논문의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대학원 학칙」 제7장 제29조에 명기한 바와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

제 12 장 보칙

제54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및 해당 대학원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신학대학원의 경우, 논문 제출을 6학점의 추가 이수로 대신하는 것은 2003년 2월 졸업자부터 시행한다.
- ② 실천목회대학원의 폐원(2001년 2월)에 따라 그 업무와 행정을 2002년 3월부터 목회대학원장이 대신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규칙 제33조제1항의 신학대학원 이수학점은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통합 규칙으로 인하여 기존의 각종 대학원 규칙은 폐지한다.
- ② 이 통합 규칙으로 기존의 재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해당 대학원 시행규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③ 기독교전문대학원의 목회학전공(D.Min.)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목회학전공 재적생(재한연한 내의 수료생 포함) 또는 타 전공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실천신학전공(Th.D. in Min.)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신학대학원 이수학점 변경에 따라 기존 재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대학원학칙시행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 분리 설립허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8699(2024.12.11.) 「학교법인 천안백석학원 법인 설립허가 알림」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적용 등은 종전 내용을 적용한다.